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덕준 의원)

의안 번호	21-44
----------	-------

발의년월일: 2021. 4. .

발의자: 장덕준,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영미, 김종선, 김진천

###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에 처하여 폐업 하려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3.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1. 4. 9. ~ 4. 14.

나. 불 입: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지원
2.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8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u></p> <p><u>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재창업 지원</u></li> <li><u>2.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li> </ol>

##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8조의2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비 100% 사업
  -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지급
  - 2020.3.22.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00개소
3. 비용추계의 결과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2,000\text{개소} \times 500,000\text{원} = 1,000,000,000\text{원}$
4. 재원조달 방안
  -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이창민
연락처	02-3153-8575